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6조).
-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함(안 제138조).

II. 검토의견

○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증의 곤란 구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개정안 제121조의2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존의 입법례는 권리자의 청구에 인한 소멸시효 중단²⁾을 규정하거나, 채무자의 안내·통지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³⁾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의 지급 안내·통지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도록 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2)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3)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또한,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권을 새로 부여하였는데, 이는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①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②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적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③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임.

동 사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의 중

대성과 신뢰보호·법적 안정성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롭게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안 제121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대상이 되어 장기간 존속할 수 있게 됨.

개 정 안
부 칙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

- (안 제121조의2) 중앙회의 안내·통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제금 지급 활성화와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부칙 제3조) ① 소멸시효는 사회 질서 유지, 법적 안정성 확보, 증명 곤란의 구제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개별법의

부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개정안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③ 개정안에 의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시행된 2007. 3월 이후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제금에 대하여 지금 청구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우려가 있고, 과거 자료 소멸 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다른 공제제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퇴직공제금 등)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이상의 사항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 확보, 중앙회의 신뢰이익 보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

- (안 제121조의2) 중앙회의 안내·통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① 민법상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경우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례⁴⁾가 다수 있고, ② 5년 이내에 1회라도 안내·통지가 있으면 반복적 시효 중단으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안 부칙 제3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⁵⁾와 관련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의 규모와 미청구자의 수, 중앙회 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이미 시효 완성으로 안정된 권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의견임.

(전문위원 박 혜 진)

-
- 4)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5) 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 전원합의체 결정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